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제221317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안 별표 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의자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9. 23.

다. 회 부 일 : 2025.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 별표 2 -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취약산업지원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취약산업지원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취약산업지원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기금명	취약산업지원기금
재 원	◦ 정부의 출연금 ◦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그 밖에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거나 기업의 채무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
용 도	◦ 취약산업기업 경영에 필요한 융자 ◦ 취약산업기업의 채무에 대한 보증 ◦ 취약산업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경감 또는 보전 ◦ 취약산업기업의 무역보험 지원 ◦ 취약산업기업의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 취약산업기업의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관 리	기획재정부장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관세 인상,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산업 전반의 경영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산업생태계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원자재·물류비 상승과 환리스크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책금융지원체계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지원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지원 목적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외부충격에 따른 특정 산업군의 급격한 위기에 신속·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및 집행 효율성의 추가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취약산업기업 경영에 필요한 융자 및 채무 보증 등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급격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 산업생태계의 연쇄적 붕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금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이 낮으며,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재원조달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부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이 불가피해 기존 제도 대비 효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

여 「국가재정법」 제14조²⁾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및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기금의 재원 중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정책금융기관은 정부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을 공급하거나 보증·보험 등의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정책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

한국산업은행(산업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 한국수출입은행(수출입 촉진 및 대외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 금융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진흥 및 대외거래 안정) 등은 모두 산업 및 기업의 경

2)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이들 기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기금의 재원과 용도 간 목적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기금의 재원구조가 출연금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정책금융기관의 출연의 경우 출연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경기변동이나 재정여건에 따라 출연 규모가 유동적으로 변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원조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취약산업은 외부 경제요인의 급변에 따라 매출 급감, 수출입 차질, 고용불안 등 단기간 내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임.

기금은 일반회계 예산과 달리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고, 사용 후 잔여 재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예산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경기변동 등 산업위기 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기금 형태의 신축적 운용체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다음으로,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측면에서는, 현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이 각기 산업정책, 무역금융, 중소기업진흥 등 개별 목적에 따라 분리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대외경제 충격과 같은 복합적 위기상황에서는 기관 간 공조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따라서 취약산업지원기금은 이러한 제도 간 공백을 보완하여, 위기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지원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기금 신설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다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既지원 중에 있으며, 특히 한미 관세협상 후속대책으로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한미 관세협상 후속대책 관련 지원 현황(2025년)]

(단위: 억원)

지원 내용	지원액
산은·수은 등 정책금융기관 통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136,000
수출기업대상 무역보험 지원	2,700,000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제공	4,000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 한 특별법</u>

문의처
02)6788-5152